

생활보장제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활보장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교역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목회 사명에 충실하도록 돕는다.
2. 교역자의 도시 밀집화 경향을 막고 농어촌 취약 지구에까지 고루 교역자를 수급하도록 돕는다.
3. 산업 선교 및 특수선교 분야를 개발 또는 지원하는 일을 돕는다.
4. 지역 간의 격차, 교회 간의 격차를 가급적 좁혀 균형 있는 교회 발전과 교역자 간의 유대를 도와 성숙한 선교 공동체를 이룬다.

제3조 (조직)

본 위원회는 여성 위원 1인과 각 노회 대표 1인으로 조직하되 노회 생활보장제위원으로 구성하며, 노회로부터 문서접수 후 위원 자격을 갖는다.

제4조 (임원)

본 위원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서기 1인

제5조 (임무)

본 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생활보장제 운영을 위한 재원 또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생활비 보조 조정 및 지급 대상자 심사 결정

제6조 (회의)

1. 본 위원회는 3월과 10월에 정기회로 모인다.

2. 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본 위원회의 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며 결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 (재원형성)

본 교단 총회 생활보장제 부담금 재원은 다음과 같이 마련한다.

1. 본 교단 총회 모든 지 교회는 해 교회에 시무하는 목사, 준목, 부목사, 전도사의 십일조의 50%를 의무적으로 총회에 납부한다.
2. 타 기관에서 시무하는 본 교단 목사, 준목, 전도사는 사례비의 5%를 본인이 의무적으로 총회에 납부한다.
3. 특수선교 분야에서 시무하는 목사, 전도사 및 사회선교사는 사례비(활동비)의 5%를 본인이 의무적으로 총회에 납부한다.

제8조 (지급 방안)

1. 본 위원회는 매년 파악한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재원 형성에 따른 생활비 보조 및 시행세칙을 결정한 후 노회에 통보한다.
2. 노회 위원회에서는 생활비 보조 대상자를 심사한 후 심사 확인서 및 추천서를 첨부하여 대상 교회 생활비 차액표를 작성하여 총회에 청원한다. 이때 노회 위원회는 심사 및 추천을 위하여 별도의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는 노회 위원회의 보고와 청원에 기초하여 심사한 후 대상자와 지급액을 결정하고 매월 증순에 지급한다.
4. 단독 목회하는 목사, 준목, 전도사의 이동 시에는 노회의 교역자 변경 보고에 따라 동일 교회 후임 교역자에게 지급한다.
5. 지급기간은 당해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한다.
6. 총회 생활보장제 부담금 의무이행자가 무임이 되었을 경우, 이를 노회가 총회에 무임을 보고함과 동시에 일정 기간(6개월) 동안 최저 생활보장제 혜택을 줄 수 있다.

제9조 (심사기준)

생활 보장제의 재원은 지교회 혹은 기관의 목사, 준목, 전도사들의 생보 부담금에 의존한 것으로 제한된 재원이므로 지급 대상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을 둔다.

1. 생활비 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교회(단독 목회하는 목사, 준목, 전도사)는 생활비 보조의 70%(배분비는 본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를 당해 교회(또는 기관)가 부담할 수 있는 교회(또는 기관)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본 위원회가 심사하여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 1) 농어촌 취약 지구 미자립교회에서 단독 목회하는 목사, 준목, 전도사
 - 2) 개척 교회에서 단독 목회하는 목사, 준목, 전도사
 - 3) 특수 선교 분야에서 시무하는 목사, 준목, 전도사 및 사회선교사
2. 본 교단 총회 산하 모든 지 교회는 소정의 교역자 생활비 실태보고서 및 전년도 결산서와 당해연도 예산서를 매년 1월 말까지 노회 생활보장제위원회(이하 노회 위원장)에 정확하게 보고한다.
3. 노회 위원회는 노회 산하 모든 지 교회 교역자 생활비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2월 중순까지 본 위원회에 보낸다.

제10조 (생활보장제 지급자 관리)

생활보장제 지급 대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보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교회나 교역자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생활비 보조액을 총회 생활보장제위원회에 반환한다.

제11조 (재정)

1. 생활보장제도의 재정은 생활보장제 부담금과 기타 현금으로 충당한다.
2. 본 위원회의 사업비는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생활보장제 부담금은 원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시행세칙 제정은 제12조를 준용한다.

1985년 9월 제70회 총회
은급위원회 규정과 생활보장제운영위원회의 규정을 통합 개정
1990년 9월 제75회 총회
생활보장제위원회 규정과 총회 연금재단 이사회 정관으로 분리 개정
1996년 9월 제81회 총회 개정
2003년 9월 제88회 총회 개정
2004년 9월 제89회 총회 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개정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 개정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1년 9월 제106회 총회 개정
2025년 9월 제110회 총회 개정